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8.(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3. 11. 17.
- 회부일 : 2023. 11. 20. (의안번호 : 23-112)

2. 제안이유

구민의 인권 보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4조)
- 인권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인권 교육(안 제6조~제7조)
- 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9조~제1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입법예고: 2023. 7. 13 .~ 8. 2.
 - 의견제출: 13건(익명 포함)
 - 반영여부: 미반영(원안 유지)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기본계획과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제정 취지(적정성/타당성)

본 제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에 근거함에 따라 인권보장 및 국가 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 조례 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19개 자치구 제정 시행 중

(2023. 11. 현재)

자치구명	제정일	자치구명	제정일
동작구	2014. 12. 24	서초구	2015. 2. 12
은평구	2015. 10. 22	동대문구	2016. 12. 15
종로구	2018. 11. 16	중구	2018. 12. 28
성동구	2018. 12. 31	구로구	2019. 12. 30
중랑구	2020. 1. 2	관악구	2020. 7. 9
강서구	2020. 7. 15	강북구	2020. 10. 30
송파구	2020. 11. 12	도봉구	2020. 12. 31
광진구	2021. 3. 4	영등포구	2022. 7. 14
노원구	2022. 9. 15	양천구	2022. 11. 10
서대문구	2023. 8. 2		

○ 조항별 구성 및 내용

- 조례구성: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

조항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정의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구민의 협력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	인권교육	제16조	간사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17조	위원회 의견 청취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8조	수당 등

○ 주요내용

- 가. (안 제1조~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임.
- 나. (안 제6조)에는 인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임.
- 다. (안 제7조)에는 소속 공무원, 사업장,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관한 내용임.
- 라. (안 제9조~제17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임.

6.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에 근거하고,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 ‘인권기본 조례’를 제정 권고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조례제정 된 상태이며,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 보장·증진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 시대에 세계 곳곳의 다문화상을 포용하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자치구의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형식적인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관련 단체나 구민들에게 인권기본 조례를 알리는 활동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관계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